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,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,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,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41호, 2022. 1. 11. 공포, 2022. 7. 12. 시행)됨에 따라,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91호, 2021. 10. 19. 공포, 2022. 4. 20. 시행)됨에 따라,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·범칙금 항목 신설(안 별표 6, 별표8)

나.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
범칙금 항목 신설(안 제93조, 별표8, 별표10)

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
의무 위반 시 과태료·범칙금 항목 신설(안 제93조, 별표6, 별표
8)

라.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
확대로 과태료 항목 신설(안 별표6)

마.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범칙금 항목
신설(안 별표8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4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 제2항 중 “제27조”를 “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제1호·제2호”로 한다.

별표 6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1의2.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금지·제한된 곳을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6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5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4만원

별표 6에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행한 차

별표 6 제2호의2를 제2호의3로 하고,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2의2.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 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

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		3) 이륜자동차등: 5만원
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

별표 6에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다목·라목·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다.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표 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라.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 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 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마.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 환·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· 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4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3만원

별표 6 제4호의2,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,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,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4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·유턴·후 진을 한 차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5만원

나.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 다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금지 시기·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차 라.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·유턴·후진 을 한 차		1) 승합자동차등: 6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5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4만원
---	--	--

별표 6에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입한 차

별표 6에 제4호의4를 제4호의5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4의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.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나.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 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5만원

별표 6 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고, 같은 표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6의3. 법 제37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·조작 불이행(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)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3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2만원

별표 6 제6호의4(중전의 제6호의3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6의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.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 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 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나.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 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 전기준을 넘어서 상태로 운전한 차 다.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 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 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라.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5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6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5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4만원

전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차 또는 노면전차	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6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8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.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나.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다.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5만원

별표 6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10의2.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·원동기장치자	제160조제3항	3만원

전거의 고용주등		
----------	--	--

별표 6 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12의2.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 등	제160조제3항	6만원

별표 8에 제5호의2, 제25호의2, 제3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범 칙 행 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범칙금액
5의2.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	제25조의2제1항	1) 승합자동차등: 7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6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4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3만원
25의2. 회전교차로 진입·진행방법 위반	제25조의2제2항 · 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3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2만원
34의2.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 항 위반	제50조의2제1항	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

		3) 이륜자동차등: 3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2만원
--	--	--

별표 8 제11호 중 “방해를 포함한다”를 “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1호의 근거 법조문(도로교통법)란 중 “제27조제1항·제2항”을 “제27조제1항·제2항·제7항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27호의 근거 법조문(도로교통법)란 중 “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제1호·제2호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52호 중 “방향전환·진로변경”을 “방향전환·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·진출”로 한다.

별표 10 제5호의 근거 법조문(도로교통법)란 중 “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제1호·제2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3조(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)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, 제6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17조제3항, <u>제27조</u> 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.	제93조(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제1호·제2호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